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

성 북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1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6. 3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”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특별위원회 존속기간: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심사안건: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,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- 심사방법: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·답변,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

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제64조, 제150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7조, 제38조